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2014. 02 개정

[제정배경 및 목적]

기관투자자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단순히 매매차익을 위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소극적인 투자자의 자세에서 벗어나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적극적 투자자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종래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들은 비교적 손쉽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주주총회에서조차 대부분 찬성 투표로 일관하는 태도에서 보듯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인식 부족과 함께 이들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조언을 제공할 시장 인프라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바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원칙]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핵심원칙으로 하며, 다시 4개의 세부원칙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 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 간 평등 대우
- 주주와 기업에 대한 책임경영
- 이사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가이드라인 원칙은 현행 법제의 기본정신과 요청을 반영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국내 기업이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기업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업의 사업구조, 운영방식, 지배구조는 이들 원칙을 반영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이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안건을 판단할 때 가이드라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개정 절차 및 특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외 관련 법제와 기업지배구조 동향, 그리고 각종 지침과 모범규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환경, 국내외 관련 법제 및 지배구조 동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둔다.

[규정 방식]

이 가이드라인은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의안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모든 종류의 의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관 규정사항인지 여부, 해당 주주총회 의안이 정관 개정안이나 주주제안인지 여부 등 의안의 종류를 불문하고, 단일한 기준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찬성이나 반대를 결정할 수 있다.

[규정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첫째, 상법 등 관련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사가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둘째, 이 가이드라인이 공문화됨으로써 관련 법 개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주 가치의 제고라는 기본원칙상 필요한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의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강행법규에서 금지된 의안이라 하더라도 일단 정관에 규정되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면 소송을 통해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거나 결의취소가 되기 전까지 회사 입장에서 해당 정관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일반적으로 무효라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의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활용방안]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 상장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다만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개별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별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일러두기

- 이 가이드라인 각 규정에서 말하는 '임원'은 이사, 감사, 집행임원 외에 임원 선·해임, 정관 변경 등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과 관련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지칭하는 사실상 이사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Ⅰ. 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3
1.1 이사회 규모 변경	
1.2 이사회외 사외이사 비중	
1.3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1.3.1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1.3.2 선임사외이사 도입	
1.3.3 상무담당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1.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2. 감사위원회	4
2.1 설치 의무 없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2.1.1 상근감사를 둔 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2.2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3. 이사회 내 위원회 (총칙)	4
3.1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3.2 위원회규정 마련 및 공시	
3.3 사외이사 구성 비율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4.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4.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5. 보상위원회	5
5.1 보상위원회 위원 구성	
6. 내부거래위원회	5
6.1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6.2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구성	
6.3 내부거래의 주주총회 승인	

II. 이사·감사

7. 사내이사	9
7.1 사내이사 후보의 결격사유	
7.2 사내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	
8. 사외이사	10
8.1 사외이사 후보 결격사유	
8.1.1 사외이사의 전문성 요건	
8.2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공시	
8.3 사외이사의 임기 변경	
8.4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	
9. 대표이사	12
9.1 대표이사 후보의 전문성 등 판단 기준	
9.2 대표이사의 3기 이상 연임	
9.3 경영승계 규정 공시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Contents

10.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13
10.1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10.2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10.3 감사위원 후보 추천	
10.4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11. 집행임원	14
11.1 집행임원제도 도입	
11.2 집행임원 세부 규정 공시	
12. 이사 선임	28
12.1 이사 후보 투표 방법	
12.1.1 이사 선임 방법	
12.2 다수의 이사후보 투표 방식	
12.3 이사 임기구조 변경	
12.4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12.5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안건 찬반 여부 공개	

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

13. 이사·감사의 보수	17
13.1 이사 보수 한도 수준	
13.2 이사 보수의 주식 지급	
13.3 임원별 보수 공시 확대	
13.3.1 개별 임원 보수 공시 확대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13.3.2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	
13.3.3	최대주주 등의 보수총액 공시	
13.3.4	보상 내역·기준 상세 공시	
13.4	감사 보수 한도 수준	
14.	성과 보상	18
14.1	무조건적인 성과급 지급	
14.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4.2.1	성과와 연계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14.2.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	
14.2.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주주총회 승인	
14.3	성과연동형 보상의 지급 기준	
14.4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14.5	주식과 연계한 보상의 위험회피 방지	
14.6	성과연동보상 이연지급	
14.7	불법적인 성과연동형 보상 환수	
14.8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연계 보상	
15.	퇴직 보상	20
15.1	퇴직보상금	
15.2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혜택	
 IV. 재무제표·배당		
16.	재무제표	23
16.1	재무제표의 승인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Contents

17. 외부감사	23
17.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결정	
17.2 감사 이외의 자문서비스	
18. 배당	23
18.1 배당금 지급	
18.2 중간·분기 배당	
18.3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당 결정	
18.4 배당정책 마련 및 공시	
18.5 현물배당	
V. 자본구조	
19. 자본 증가	27
19.1 자본 증가	
19.1.1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한 증자	
19.1.2 경영상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증자	
19.2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19.3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제한	
19.3.1 신주의 제3자 배정 기준	
19.4 채무재조정 목적의 신주발행	
19.5 신주 발행의 주주총회 승인	
19.6 실권주 배정	

20. 종류주식	28
20.1 종류주식 발행	
21. 자본금 감소	28
21.1 자본금 감소	
21.2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향상을 위한 무상감자	
22. 자기주식	29
22.1 자기주식 취득	
22.1.1 경영권 보호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22.1.2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 보고	
22.2 자기주식 처분의 상대방, 처분방법	
22.2.1 자기주식 처분의 주주총회 승인	
22.3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임직원대출	
23. 사채	30
23.1 주식연계채권 발행	
23.2 특정 주주 및 제3자 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23.2.1 파산방지를 위한 제3자 배정을 통한 주식연계채권 발행	
23.3 주식연계채권 발행의 주주총회 승인	
23.4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24. 주식분할·병합	31
24.1 비례적 주식분할	
24.2 비례적 주식병합	
24.2.1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	

Ⅵ. 기업구조조정

25. 인수합병	35
25.1 인수합병	
25.1.1 불공정 행위가 개입된 인수합병	
25.1.2 사적 이익 추구 목적의 인수합병	
26. 분할 및 분할합병	35
26.1 주주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분할·분할합병	
26.1.1 경영권 방어나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분할·분할합병	
27. 상장폐지	36
27.1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 결의	
27.2 소속시장 변경 사유의 조건부 상장폐지	
28. 경영권 방어 장치	36
28.1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	

Ⅶ.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

29. 주주총회의 소집·결의	39
29.1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변경	
29.2 주주총회 일시·장소의 변경	
29.3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변경	
29.4 의결주체의 변경	

30. 회사명·회계연도 변경	40
30.1 회사명 변경	
30.2 회계연도 변경	
31. 안건 상정	40
31.1 안건 상정 방식	
31.2 일괄 상정 안건	
31.3 미공개 안건 처리	
32. 의결권 행사	40
32.1 정족수 변경	
32.2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32.3 의결권 대리 증명	
32.4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32.5 주주명부 폐쇄 기간 변경	
Ⅷ. 기업내부통제	
33. 지배구조내부규범	45
33.1 지배구조규범의 제정	
34. 준법통제	45
34.1 준법통제기준 마련	
34.2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I

이사회·감사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

I 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1.1 (이사회 규모 변경) 이사회 규모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이 제약될 정도로 이사의 수를 줄이거나 개별 이사의 영향력이 줄어들 정도로 이사의 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1.2 (이사회외 사외이사 비중) 이사회외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1.3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직을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1.3.1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3.2 (선임사외이사 도입)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3.3 (상무담당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최고재무책임자(CFO)나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회사의 상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2. 감사위원회

2.1 (설치 의무 없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반대한다.

2.1.1 (상근감사를 둔 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상근감사를 둔 회사가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2.2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3. 이사회 내 위원회 (총칙)

3.1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독립성을 저해할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찬성하고,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3.2 (위원회규정 마련 및 공시)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자격, 책임, 의사결정 절차, 자체 평가 및 보고 의무 등 상세한 위원회규정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3.3 (사외이사 구성 비율) 사외이사 구성 비율이 법정되지 않은 이사회 내 위원

회의 경우에도 위원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기존의 사외이사 비율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4.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5. 보상위원회

5.1 (보상위원회 위원 구성) 보상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6. 내부거래위원회

6.1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 등 위원회의 명칭을 불문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내부거래”, 상법상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에서 정하는 거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속하는 거래 등(이하 “내부거래”)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거래를 사전에 심사하고 승인하는 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6.2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구성)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6.3 (내부거래의 주주총회 승인)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주주총회 승인 사항으로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II

이사·감사

Ⅱ 이사·감사

7. 사내이사

7.1 (사내이사 후보의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법규 위반으로 법령상 결격사유에 준하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주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 적절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재무상태, 이사회결의 관련 사항 등 주주가 의결권 행사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감춘 경우
 - 겸임으로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회사 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

7.2 (사내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 사내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찬성한다.

- 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최근 1년간 보수액”의 개념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
- 책임 감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실제 책임 감면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
-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규정(경업·자기거래·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사내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을 최소한으로 하여 책임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이사나 제3자가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감안하여 이사의 책임 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할 것
- 이사가 자신의 선의·무중과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것

8. 사외이사

8.1 (사외이사 후보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사내이사와 동일한 결격사유〉

- 법규 위반으로 법령상 결격사유에 준하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주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 적절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재무상태, 이사회결의 관련 사항 등 주주가 의결권 행사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감춘 경우
- 검임으로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회사 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

〈독립성 저해 등 결격사유〉

-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 본인을 포함하여 그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
- 해당 회사가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인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사나 그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사업상 경쟁관계 및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개인 혹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

-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또는 계열 회사·비영리법인에 사외이사직 외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임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해당 회사에 사외이사로서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연속 재임하는 연수가 7년(금융업종은 5년)을 초과하는 자 (단, 재임연수에는 계열회사 재임기간을 합산하며,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 최근 3년 이내에 이사회 및 위원회 연간 참석률이 75% 미만인 사업연도가 있었던 자

8.1.1 (사외이사의 전문성 요건) 다음의 전문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한다.

〈전문성 요건〉

-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상기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8.2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공시)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충족 여

부를 매년 확인 및 검토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8.3 (사외이사의 임기 변경) 사외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8.4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찬성**한다.

- 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최근 1년간 보수액”의 개념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
- 책임 감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실제 책임 감면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
-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규정(경업·자기거래·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사내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을 최소한으로 하여 책임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이어나 제3자가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감안하여 이사의 책임 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할 것
- 이사가 자신의 선의·무중과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것

9. 대표이사

9.1 (대표이사 후보의 전문성 등 판단 기준) 대표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전문성, 경험과 평판, 윤리성, 겸임 여부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9.2 (대표이사의 3기 이상 연임) 대표이사의 3기 이상 연임 시 이사회 결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9.3 (경영승계 규정 공시) 경영승계 담당조직의 구성·운영·권한·책임,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자체평가, 고위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비상시 혹은 대표이사 은퇴 시 경영승계 절차, 임원 및 후보자 교육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승계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0.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10.1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보수 중 기업공개(IPO), 도산, 구조조정, 세무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감사 용역 보수가 감사 용역 보수를 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적정 이외의 외부감사 의견을 받거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10.2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결격)요건을 준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0.3 (감사위원 후보 추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또는 구성과 기능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0.4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이사 선임 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른 이사를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1. 집행임원

11.1 (집행임원제도 도입)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1.2 (집행임원 세부 규정 공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집행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2. 이사 선임

12.1 (이사 후보 투표 방법) 이사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12.1.1 (이사 선임 방법)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보다 많은 경우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후보 중 최다 득표한 후보 순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2.2 (다수의 이사후보 투표 방식) 이사후보 각자에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이사후보를 묶어 일괄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12.3 (이사 임기구조 변경) 이사의 임기 구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전체 이사회 책임을 저하시키거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12.4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삽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12.5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안건 찬반 여부 공개)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실적 및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III

임원 보수·성과 보상

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

13. 이사·감사의 보수

13.1 (이사 보수 한도 수준) 이사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는 그 수준이 회사 및 이사회 규모의 규모,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다면 **찬성**한다.

13.2 (이사 보수의 주식 지급) 이사의 현금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3.3 (임원별 보수 공시 확대) 보상 한도, 내역 및 체계 등의 임원별 공시를 확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3.3.1 (개별 임원 보수 공시 확대) 보수가 5억원 미만이라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보수 수준이 가장 높은 일정 수 이상의 임원 보수를 공개하거나, 개별 임원의 보수 공시 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안에 **찬성**한다.

13.3.2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 개별 임원 보수 공시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을 포함하는 미등기임원에게 확대하는 안에 **찬성**한다.

13.3.3 (최대주주 등의 보수총액 공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친인척)인 등 기·미등기임원의 보수총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13.3.4 (보상 내역·기준 상세 공시) 보상 체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보상에 관한 총계 정보(고정 및 변동 보상액의 구분)
- 변동보상 금액 및 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등)
- 현금 및 주식 보상의 배분 기준
-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 이연보상액(당해 회계연도 지급액)
- 그 밖에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보상에 관한 정보

13.4 (감사 보수 한도 수준) 감사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는 그 수준이 회사 규모,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다면 찬성한다.

14. 성과 보상

14.1 (무조건적인 성과급 지급)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 성과급 지급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단, 신규 임원에 한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금액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14.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한다.

- 총발행주식 대비 주식매수선택권의 규모가 과도한 경우
- 희석률이 과도한 경우

- 주주 동의 없이 행사가격 등 계약조건을 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14.2.1 (성과와 연계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을 성과와 연계하여 설정하되 시장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4.2.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사전에 계약조건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 또는 기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반대한다. 단, 증자 및 소각 등으로 주식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14.2.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주주총회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4.3 (성과연동형 보상의 지급 기준) 임직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은 동종 업계 성과, 시장 상황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4.4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부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찬성**한다.

-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과 목표의 제시
- 매도 제한 기간의 적절한 설정
- 합리적인 부여 방법 및 지급 기준의 제시
- 총 발행주식 대비 주식 보상 규모의 적절한 설정

14.5 (주식과 연계한 보상의 위험회피 방지) 임원이 주식과 연계한 보상의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4.6 (성과연동보상 이연지급) 임원에 대한 성과연동보상 중 6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이연 지급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4.7 (불법적인 성과연동형 보상 환수) 임직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4.8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연계 보상) 사외이사에게 성과급, 퇴직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가와 연계된 보상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15. 퇴직보상

15.1 (퇴직보상금) 이사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안에 대해서는 과거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경우에 반대한다.

15.2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혜택) 사외이사에게 퇴직혜택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IV

재무제표·배당

IV 재무제표·배당

16. 재무제표

16.1 (재무제표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안에 대해 외부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에는 반대한다.

17. 외부감사

17.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결정)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결정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7.2 (감사 이외의 자문서비스)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이외에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8. 배당

18.1 (배당금 지급) 배당금 지급 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 계획, 동종업계 배당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수준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18.2 (중간·분기 배당) 중간 또는 분기 배당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8.3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당 결정)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결정하게 하는 안에 대해 주주 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당을 회사 성과와 적절히 연계하는 등 배당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18.4 (배당정책 마련 및 공시) 주주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배당을 회사 성과 및 재무상황과 연계하는 등 배당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18.5 (현물배당) 현금배당 이외에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배당으로 지급할 현물의 시장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 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V

자본구조

V 자본구조

19. 자본 증가

19.1 (자본 증가)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 자본금의 증가 등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19.1.1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한 증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하려는 목적에서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9.1.2 (경영상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증자) 상장폐지 등 경영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9.2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증자를 위해 준비금을 자본금 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9.3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제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배제·제한의 근거, 목적, 범위, 기준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한다.

19.3.1 (신주의 제3자 배정 기준) 신주를 제3자에 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 목적, 발행 규모 및 가격, 발행 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19.4 (채무재조정 목적의 신주발행) 채무재조정의 목적으로 보통주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제안 조건, 재무 상황, 경영권 관련 사항, 이해상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19.5 (신주 발행의 주주총회 승인) 신주 발행을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9.6 (실권주 배정)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임직원, 사외이사에게 실권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20. 종류주식

20.1 (종류주식 발행) 회사의 자금조달원의 다양화를 기하고 악의적인 적대적 M&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류주식의 발행에 찬성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M&A를 부당하게 방어하기 위한 종류주식의 발행에 **반대**한다.

21. 자본금 감소

21.1 (자본금 감소) 자본금 감소의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한다.

- 기업회생, 자본조달,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감자인 경우

21.2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향상을 위한 무상감자)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무상감자 안에 대해 반대한다.

22. 자기주식

22.1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 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과거 취득의 적정성,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22.1.1 (경영권 보호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주주가치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22.1.2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 보고)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의 결과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22.2 (자기주식 처분의 상대방, 처분방법) 주주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경영권 방어에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등의 소지가 없도록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22.2.1 (자기주식 처분의 주주총회 승인) 자기주식의 처분을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22.3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임직원대출)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해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조합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한다.

23. 사채

23.1 (주식연계채권 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다음의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전환가격 및 신주인수가액, 재무 상황, 경영권 관련 사항,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23.2 (특정 주주 및 제3자 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특정 주주 및 제3자 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안에 대해서는 발행 목적, 발행 규모 등이 적정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지 않으며, 시장 반응도 부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23.2.1 (파산방지를 위한 제3자 배정을 통한 주식연계채권 발행)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3자 배정을 통한 주식연계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23.3 (주식연계채권 발행의 주주총회 승인) 주식연계채권의 발행은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23.4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 규모가 크지 않고,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24. 주식분할·병합

24.1 (비례적 주식분할)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주식분할 안에 대해 찬성한다.

24.2 (비례적 주식병합)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주식병합 안에 대해 찬성한다.

24.2.1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 안에 대해서는 경영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에 대해 불리하게 행하는 경우 등 기존 주주에 해가 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대한다.

VI

기업구조조정

VI 기업구조조정

25. 인수합병

25.1 (인수합병) 인수합병의 안에 대해서는 합병 대금의 적정성, 관련 정보의 공시 수준, 주가 흐름 등 시장의 반응, 사업상의 시너지 효과,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절차의 적정성 및 법적 위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한다.

25.1.1 (불공정 행위가 개입된 인수합병)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개입된 인수합병 안에 대해 반대한다.

25.1.2 (사적 이익 추구 목적의 인수합병) 회사 임직원이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인수합병의 안에 대해 반대한다.

26. 분할 및 분할합병

26.1 (주주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분할·분할합병) 주주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분할 및 분할합병의 안에 대해 반대한다.

26.1.1 (경영권 방어나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분할·분할합병) 경영권 방어나 경영

권 승계를 목적으로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하려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27. 상장폐지

27.1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 결의)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를 결의하는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반대한다**.

- 소액주주에게 공식적인 이의신청권이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 자진 상장폐지의 절차 및 목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
- 기존 주주에게 상장폐지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27.2 (소속시장 변경 사유의 조건부 상장폐지) 회사가 소속시장 변경의 사유로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의하는 안에 대해서는 소속시장 변경으로 회사 인지도, 자본 조달, 규제환경 등이 변화하는 데 따르는 회사 및 주주의 유·무형의 손익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28. 경영권 방어 장치

28.1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 다음과 같은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의 매각, 초과배당 등의 자본재구축 전략
- 제3자에게 자산 매각 혹은 신주인수권 부여 등 조항의 사전 약정
-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해 대표이사 혹은 이사진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과도한 규모의 퇴직보상 계약

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

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

29. 주주총회의 소집·결의

29.1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변경)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줄이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한다**.

29.2 (주주총회 일시·장소의 변경) 주주총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를 변경하려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29.3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변경)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주식보유기간이나 주식보유비율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한다**.

29.4 (의결주체의 변경)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제시 없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제한하려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30. 회사명·회계연도 변경

30.1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 안에 대해서는 인지도하락이 예상되는 등 주주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대**한다.

30.2 (회계연도 변경) 회계연도 변경 안에 대해서는 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회계연도를 변경해야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31. 안건 상정

31.1 (안건 상정 방식) 주주총회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도록 하고, 일괄 상정은 금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31.2 (일괄 상정 안건) 일괄 상정한 안에 대해서는 개별 안건 전부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31.3 (미공개 안건 처리)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바로 총회에 상정하고 처리를 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32. 의결권 행사

32.1 (정족수 변경)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족수를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32.2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자의 자격을 특정한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32.3 (의결권 대리 증명) 회사가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주의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참석장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대리권 증명 서면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32.4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주주가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방식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전면적으로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방식만 가능하도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32.5 (주주명부 폐쇄 기간 변경)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고,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연장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VIII

기업내부통제

VIII 기업내부통제

33. 지배구조내부규범

33.1 (지배구조규범의 제정) 주주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34. 준법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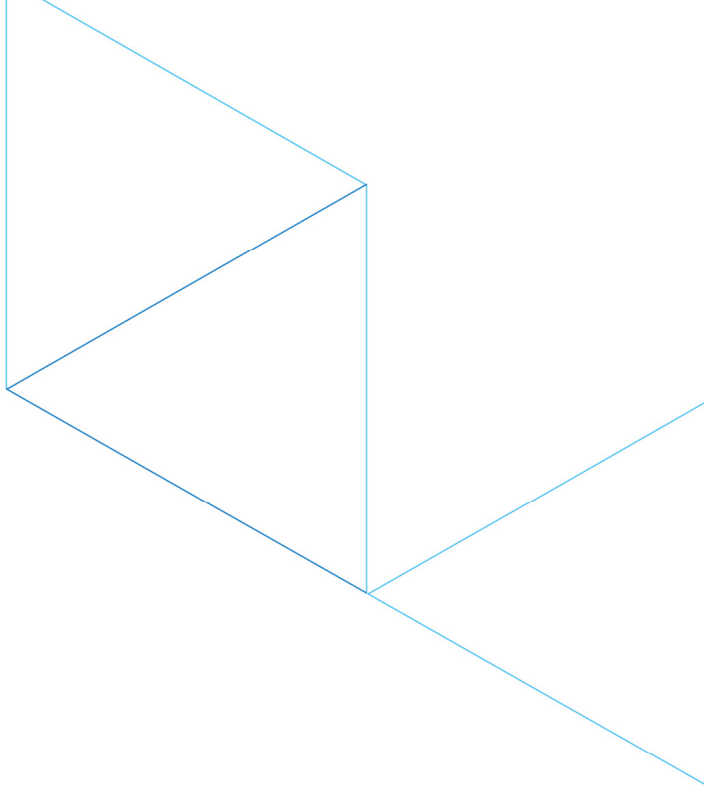
34.1 (준법통제기준 마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34.2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법령상 준법지원인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발행일 2014년 2월
발행인 박 경 서
발행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 02-3775-3339 www.cgs.or.kr
제 작 경성문화사 TEL. 02) 786-2999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